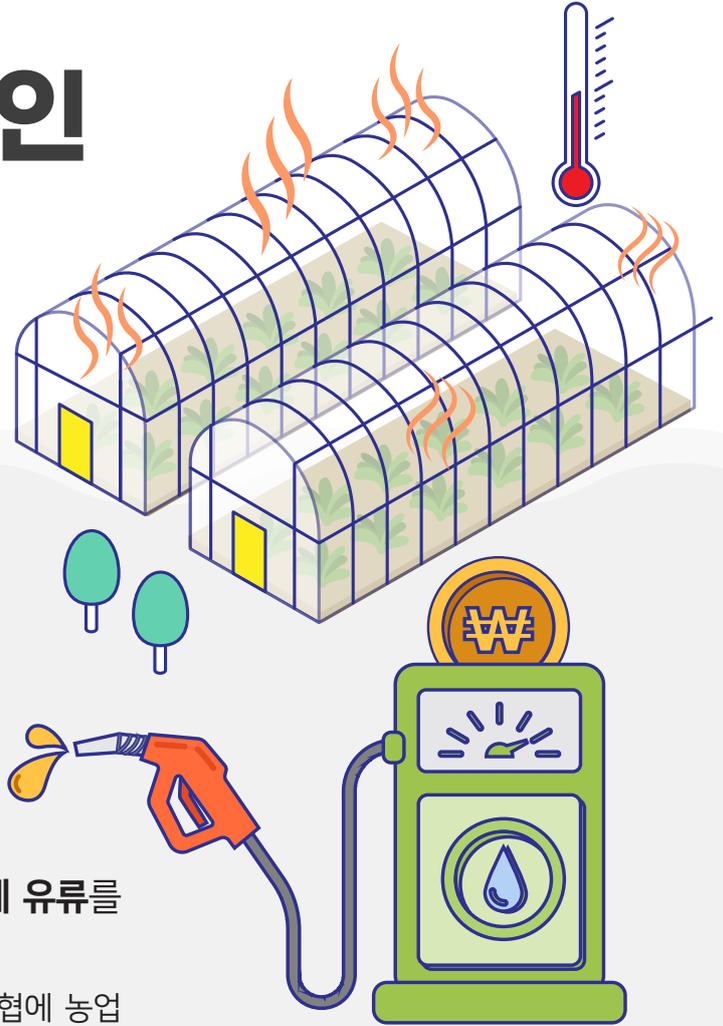


시설원에 농가·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



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시설원에 농가·법인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.

01 지원대상/요건

- 지원기간('22.10.1.~12.31.) 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에 농가·법인
 - 「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」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,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에 농가·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

02 지원내용(단가)

- 월별·유종별(난방용 등유·중유(부생연료 포함) 및 LPG) **평균가격과 기준가격('22.5월 유종별 평균가격*의 88.5%)의 차액 50%** 지원

* (등유) 1,257원/ℓ (중유) 1,261원/ℓ (부생연료1호) 1,147원/ℓ (부생연료2호) 1,192원/ℓ (LPG) 1,352원/kg

(단위: 원/ℓ, kg)

| 월 | 등유 | 중유 | LPG | 부생연료1호 | 부생연료2호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0월 | 130.78 | 39.51 | 54.74 | 129.45 | 44.04 |
| 11월 | 129.28 | 63.51 | 62.74 | 124.95 | 79.54 |
| 12월 | 94.28 | 14.01 | 55.74 | 90.45 | 65.54 |



03

지원액 산정

- 지원단가 X 난방용 면세유 구매량(22.10.1.~ 12. 31. 구입분에 한정)

* 10원 미만은 절사, 지급하한은 미설정

- 동일 유종을 복수의 농기계에 사용하는 농가(법인 포함)는 면세유 배정 신청시 등록(농협 면세유관리 시스템)한 난방기와 이외의 농기계 배정량에 따라 구매량을 배분



04

지원신청

- '23.1.16.~2.10.(26일간) 중 농가(법인)별 **면세유 관리농협**을 방문하여 "유가연동 보조금지원 신청서(이하 '신청서')" 제출
 - 신청서 제출시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
 -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, 가족 관계증명서(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) 지참



농업인·법인별 보조금은
2023년 2월말 지급될 예정입니다.

